

수탁회사 보고서

수탁회사보고서는 이 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수탁회사가 이 투자의 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」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수탁회사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2004-0991/0571

1. 투자신탁의 개요

- 가. 투자신탁 명칭 : 삼성KODEX 중대형성장 상장지수투자신탁
- 나. 분류 : 주식형투자신탁
- 다. 수탁기간 : 2008.07.30 ~ 2009.03.27
- 라. 자산운용회사 :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
- 마. 판매회사 : 교보증권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동양종합금융증권, 삼성증권, 하이투자증권

2.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운용전문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 없음

4.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법령 확인사항

- 투자설명서가 법령,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- 부합함
-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
 - 공정함
-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
 - 적정함
-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가 법, 신탁약관(투자회사 정관)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수탁회사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
 - 해당사항 없음
-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본 항목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111 조 개정(2007. 12. 28)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수탁회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수탁회사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계정의 자산운용회사인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홈페이지(<http://www.samsungfund.com>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